

보도시점 2025. 11. 13.(목) 12:00 (금요일 조간) 배포 2025. 11. 12.(수)

‘가축분뇨 고체연료’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- 저위 발열량 기준 완화해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 생산 가능
-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생산 활성화

기후에너지환경부(장관 김성환)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가축분뇨법)’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.

이번 개정안은 ‘가축분뇨 고체연료(이하 고체연료)’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* 기준을 완화하면서,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,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.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다.

*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의미하며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

먼저,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%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, 커피찌꺼기, 초분류, 폐목재류,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,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.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,000kcal/kg 이상일 경우,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,000kcal/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.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‘압축 알갱이(펠릿)’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, ‘압축 알갱이’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.

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인·허가 사항을 정비하여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.

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,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·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.

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은 ‘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’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‘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’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”라며, “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어,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. 끝.

담당 부서	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	책임자	과 장	김경록 (044-201-7060)
		담당자	사무관	장재훈 (044-201-7076)
		담당자	주무관	이신영 (044-201-7077)



① 혼합연료 생산 허용(시행규칙 별표4의2)

- (혼합)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
- (보조원료) 농작물의 부산물, 커피찌꺼기, 초본류 및 폐목재류*, 톱밥
 - * 접착제, 페인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를 제외하며 공익사업(담 부유물 수거, 가로수 전정 등)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
- (원료비) 가축분뇨 60% 이상, 보조원료 40% 미만

② 고체연료 형태 기준 완화(시행규칙 별표4의2)

-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되 비산먼지 발생 및 안전상 위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함

③ 저위발열량 기준 합리화(시행규칙 별표4의2)

- 저위발열량 기준을 3,000kcal/kg이상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3,000kcal/kg 미만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허용(2,000kcal/kg이상 3,000kcal/kg미만)
 -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연료를 생산하면서, 저열량 연료 공급을 요구·사용하는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

④ 허가·신고 관련 사항 정비

- 배출시설 설치·처리업 허가 신청 제출 서류 추가(시행령 제7조, 시행규칙 제7조, 제30조)
 - ①고체연료 생산계획 ②잔재물 처리방안 ③고체연료 보관·공급계획서 ④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투입계획 ⑤환경오염방지대책
- 고체연료화 시설 허가 여부 결정 시 검토사항 추가(시행령 제7조 제2항, 시행규칙 별표2, 별표6)
 -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, 고체연료 성분 기준 준수,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여부 등
- 변경허가가 필요한 중요사항 추가(시행규칙 제5조, 제7조,시행령 제18조)
 - ①사용시설 ②보조원료 및 원료비 ③저발열량 고체연료 생산